

투자 위험 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신한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신한중은아침희망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한중은아침희망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신한중은아침희망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신한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www.shinhanfund.com)의 인터넷홈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2026년 09월 11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6년 09월 18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 또는 매출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행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9.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설명서 목차]

● 요약 정보 - 간이투자설명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용어정리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6.09.11

신한중은아침희망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펀드코드 : 41299]

투자 위험 등급 2등급(높은 위험)

신한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본 손실 위험, 증권 등 가격변동 위험, 시장 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SRI 주식의 가격변동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신한중은아침희망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1) 기본 운용전략

1) 이 투자신탁은 국내 업종대표 기업으로 실적 안정성이 높은 기업 혹은 업종 내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거나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주식 등에 투자하는 신한중은아침희망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100%이하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 사회,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해당 기업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신한Tops아름다운SRI증권모투자신탁[주식]과 역사적으로 높은 배당수익률을 유지하였거나,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향후 높은 배당금을 지불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신한프레스티지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각 50%이하,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우량주 등에 투자하는 신한패러다임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30%이하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2)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 등에 투자하여 해당 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을 추구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상기 기본 운용전략 외에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비교지수 : KOSPI종합지수*95% + 콜금리*5%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변경 및 투자자에게 공시 될 예정입니다.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모투자신탁 명칭	주요 투자전략	투자비중
신한중은아침희망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국내 업종대표 기업으로 실적 안정성이 높은 기업 혹은 업종 내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거나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주식 등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40% 이내에서 채권 및 어음,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100% 이하
신한Tops아름다운SRI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주로 환경, 사회,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해당 기업 주식(이하 “SRI 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합니다. 합당한 종목 선별을 위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심사와 재무적 판단 분석을 통해 종목군을 평가·엄선하여 투자합니다. 투자신탁재산의 40%이하를 채권 및 어음,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50% 이하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모투자신탁 명칭				주요 투자전략					투자비중	
	신한프레스티지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 [주식]				이 투자신탁은 역사적으로 높은 배당수익률을 유지하였거나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의거하여 향후 높은 배당금을 지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회사의 보통주, 우선주 등에 투자신탁재 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며, 투자신탁재산의 40% 이하를 채권 및 어음,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50% 이하	
신한패러다임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 [주식]				이 투자신탁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우 량주 등에 투자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산업 패 러다임(K-소비재, AI, 주주가치, 바이오, 친환경, 산업재, K- 컬처, 플랫폼, 씨크리컬 등)의 변화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Bottom-up 리서치를 통한 펀더멘탈 분석 중심으로 선별된 종목들에 투자합니다.					30% 이하		
분류	투자신탁, 증권형(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전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연)보수 및 비용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 - 오프라인(A)	납입금액 의 1.000%	1.5000	0.8000	1.4300	1.5092	252	410	572	915	1,879
	수수료미징구 - 오프라인 - 보수체감(C1)	없음	2.2000	1.5000	1.5900	2.2000	223	440	649	1,047	2,120
	수수료선취 - 온라인(A-e)	납입금액 의 0.500% 이내	1.1000	0.4000	1.1600	1.1059	162	279	400	656	1,388
	수수료미징구 - 온라인(C-e)	없음	1.2000	0.5000	1.1900	1.2092	123	251	384	664	1,462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 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로 가정하였습니다. 상기 종류 C1의 경우 이연판매보수 적용으로 매년 판매회사 보수가 인하되는 것으로 계산 한 총비용입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1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6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4년4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상기 종류 수익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6) 총 보수 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자투자신탁의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 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포함)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 이후					
		2025.09.01 ~ 2026.08.31	2024.09.01 ~ 2026.08.31	2023.09.01 ~ 2026.08.31	2021.09.01 ~ 2026.08.31						
	수수료선취 - 오프라인(A)	126.60	59.27	38.22	16.21	6.74					
	수수료선취 - 온라인(A-e)	127.45	59.89	38.75	16.67	15.83					
	수수료미징구 - 온라인(C-e)	127.23	59.73	38.62	16.55	12.71					
	비교지수(%)	107.73	56.81	37.00	15.84	9.14					
	수익률 변동성(%)	41.72	32.60	28.04	23.82	20.92					

(주1) 비교지수 :
 설정일 이후 - 2004.04.11 : 비교지수 없음, 2004.04.12 이후 : KOSPI종합지수*95% + 콜금리*5%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다만, 설정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 수익률에 대해 연환산하게 되므로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중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4) 상기 종류 수익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5)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주6)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7) 상기 수익률 정보는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을 대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에 대한 수익률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은 아래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과 같습니다.

*** 신한중은아침희망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6.08.31 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주식형)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한솔	1990	책임운용역	38개	10,849억원	111.58 %	83.84%	102.89 %	72.36%	3년 6개월
김일곤	1999	부책임운용역	0개	억원	-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2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상기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주식운용2팀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 신한Tops아름다운SRI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6.08.31 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주식형)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철	1980	책임운용역	14개	1,957억원	119.39 %	82.06%	102.89 %	72.36%	11년 6개월
윤장한	1991	부책임운용역	21개	2,738억원	126.28 %	87.38%			3년 3개월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1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상기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주식운용1팀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6) 지속가능금융관련서비스회사인 지속가능 금융센터 주식회사로부터 기업정보분석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 신한프레스티지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6.08.31 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주식형)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철	1980	책임운용역	14개	1,957억원	119.39 %	82.06%	102.89 %	72.36%	11년 6개월
윤장한	1991	부책임운용역	21개	2,738억원	126.28 %	87.38%			3년 3개월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1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상기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주식운용1팀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 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 신한패러다임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6.08.31 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주식형)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정성한	1976	책임운용역	25개	7,068억원	110.13 %	97.07%	102.89 %	72.36%	22년 6개월
김한솔	1990	부책임운용역	38개	10,849억원	111.58 %	83.84%			3년 6개월
이철	1980	부책임운용역	14개	1,957억원	119.39 %	82.06%			11년 6개월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투자운용본부장, 주식운용2팀, 주식운용1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상기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주식투자운용본부장, 주식운용2팀, 주식운용1팀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 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 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음

투자자 유의사항	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 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를 참고 바랍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주요 투자 위험	원본 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증권 등 가격 변동위험	투자대상 증권의 발행회사 영업환경, 재무상황, 신용상태 악화 및 시장에서의 증권 수급상황 등의 이유로 인해 투자대상 증권의 가격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시장의 지정학적 위험 및 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시장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당 증권 시장 전체의 가격하락 또는 이자율 변동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적은 원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SRI 주식의 가격변동위험	이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SRI 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모투자신탁의 수익은 국내 주식시장의 대표 지수들의 변동과 별개로 투자대상인 SRI 주식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더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방법	가. 15시30분 이전: 제2영업일 (D+1)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15시30분 경과 후: 제3영업일 (D+2)의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방법	가. 15시30분 이전: 제2영업일(D+1)의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D+3)에 지급 나. 15시30분 경과 후: 제3영업일(D+2)의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D+3)에 지급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 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인터넷홈페이지
과세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 등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및 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세제(퇴직연금 전용 종류 수익증권만 해당) 이 투자신탁은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며 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1) 보수인하 종류 수익증권 간의 전환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전환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이하 "최초매수일"이라 합니다.)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청구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1.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종류 C1 수익증권을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종류 C2 수익증권을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3.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종류 C3 수익증권을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4.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 종류 C4 수익증권을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전환 상기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상기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하며,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상기 전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종류 A-u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각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는 종류 A-u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류 A-u 수익증권에서 그 외 종류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판매회사는 위 전환을 적용함에 있어 그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전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3) 펀드 간 전환(엠크렐러 클래스 펀드 간의 전환) ①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 A-u 수익증권에 관하여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서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투자자에 게 부여되는 전환형 집합투자기구로, 전환 대상 펀드 및 전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중 “전환형 구조” 및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 중 “종류 A-u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종류 A-u2 까지 있는 경우 “종류 A-u2 또는 A-u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및 “펀드 간 전환 (엠크렐러 클래스 펀드 간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전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업자	신한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767-5777 / 인터넷 홈페이지: www.shinhanfund.com), (모투자신탁의 투자자 문회사: 지속가능 금융센터 주식회사, 업무범위: 상장기업의 ESG(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기업지배구조)) 평가 및 분석 업무)																						
모집(판매)기 간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 니다.	모집(매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효력발생일	2026년 09월 18일	존속 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 고 있습니다.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종류(Class)</th><th colspan="2">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3">판매 수수료</td><td>수수료선취</td><td colspan="2">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6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6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 <td>수수료후취</td><td colspan="2">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td></tr> <tr> <td>수수료미징구</td><td colspan="2">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6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6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 <td rowspan="2">판매 경로</td><td>온라인(e)</td><td colspan="2">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 <td>오프라인</td><td colspan="2">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 </tbody> </table>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선취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6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6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수수료미징구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6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6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선취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6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6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수수료미징구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6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6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집합투자 기구 의 종류	판매 경로	온라인슈퍼 (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S 관련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다른 클래스(가입자격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타	보수체감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무권유저비 용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	기관투자가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전환가능1	신한 엠브렐러 클래스 펀드간에 전환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shinhanfund.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shinhanfund.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종류)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신한중은아침희망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41299
수수료선취-오프라인(종류A)	74871
수수료선취-온라인(종류A-e)	AJ426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종류A-g)	BP755
수수료선취-오프라인-전환가능1(종류A-u)	2852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종류C1)	7487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종류C2)	9638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종류C3)	9638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종류C4)	9638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종류C5)	96388
수수료미징구-온라인(종류C-e)	AJ42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종류C-g)	BP75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기관(종류C-i)	1886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종류C-i2)	BG35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종류C-r)	BG34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종류C-re)	BT70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종류C-w)	26444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종류S)	AQ72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형(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 전환형(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이 가능한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해당여부 : X (해당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지칭합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1좌=1원, 펀드설정일 기준)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2)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주1)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11. 매입·환매 및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종류)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신한좋은아침희망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41299
수수료선취-오프라인(종류A)	74871
수수료선취-온라인(종류A-e)	AJ426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종류A-g)	BP755
수수료선취-오프라인-전환가능1(종류A-u)	2852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종류C1)	7487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종류C2)	9638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종류C3)	9638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종류C4)	9638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종류C5)	96388
수수료미징구-온라인(종류C-e)	AJ42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종류C-g)	BP75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기관(종류C-i)	1886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종류C-i2)	BG35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종류C-r)	BG34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종류C-re)	BT70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종류C-w)	26444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종류S)	AQ723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3.12.31	BEST 6M 중기 채권 1호 최초 설정
2021.12.16	운용전문인력 변경(신한Tops아름다운SRI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변경전:임은미(책임운용역),김형관(부책임운용역) -변경후:김형관(책임운용역)
2021.12.30	운용전문인력(신한좋은아침희망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변경 변경전- 책임운용역:유영권, 부책임운용역:최준석 변경후- 책임운용역:최준석, 부책임운용역:없음
2022.04.14	운용전문인력 변경 * 신한좋은아침희망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변경전- 최준석(책임운용역) 변경후- 홍성원(책임운용역)
2022.05.27	모투자신탁 펀드명 변경 -변경전: 신한뉴그로스중소형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변경후: 신한중소형주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4.06.04	전환대상 투자신탁(신한미국증권투자신탁(H)[주식], 신한에너지&농산물인덱스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파생형]) 환매주기 변경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24.12.19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 1) 신한중은아침희망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변경전: 홍성원(책임운용역) -변경후: 김주영(책임운용역), 윤종원(부책임운용역) 2) 신한Tops아름다운SRI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변경전: 김형관(책임운용역) -변경후: 고영훈(책임운용역), 서태원(부책임운용역) 3) 신한프레스티지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2024.12.16) -변경전: 최준석(책임운용역) -변경후: 고영훈(책임운용역), 서태원(부책임운용역)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S 관련 클래스 가입자격 변경)
2025.02.14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신한중소형주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변경전: 정성한(책임운용역), 이유라(부책임운용역) -변경후: 정성한(책임운용역), 이유라, 박시은(부책임운용역)
2025.03.27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 1) 신한Tops아름다운SRI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변경전: 고영훈(책임운용역), 서태원(부책임운용역) -변경후: 고영훈(책임운용역), 이유정(부책임운용역) 2) 신한프레스티지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변경전: 고영훈(책임운용역), 서태원(부책임운용역) -변경후: 고영훈(책임운용역), 이유정(부책임운용역)
2025.04.30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신한중은아침희망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변경전: 김주영(책임운용역), 윤종원(부책임운용역) -변경후: 이철(책임운용역), 송우연(부책임운용역)
2025.07.24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신한중은아침희망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변경전: 이철(책임운용역), 송우연(부책임운용역) -변경후: 이철(책임운용역), 송우연(부책임운용역), 박시은(부책임운용역)
2025.08.07	1. 모투자신탁 펀드명 변경 -변경전: 신한중소형주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변경후: 신한패러다임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모투자신탁 투자전략 변경
2025.08.28	모펀드(신한패러다임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전략 보완
2025.09.26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 1) 신한Tops아름다운SRI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변경전: 고영훈(책임운용역), 이유정(부책임운용역) -변경후: 이철(책임운용역), 송우연(부책임운용역) 2) 신한프레스티지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변경전: 고영훈(책임운용역), 이유정(부책임운용역) -변경후: 이철(책임운용역), 송우연(부책임운용역)
2025.11.28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신한패러다임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변경전: 정성한(책임운용역), 이유라, 박시은(부책임운용역) -변경후: 정성한(책임운용역), 김한솔, 박시은(부책임운용역)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26.01.30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 1) 신한Tops아름다운SRI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변경전: 이철(책임운용역), 송우언(부책임운용역) -변경후: 이철(책임운용역), 박시은(부책임운용역) 2) 신한프레스티지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변경전: 이철(책임운용역), 송우언(부책임운용역) -변경후: 이철(책임운용역), 박시은(부책임운용역) 3) 신한좋은아침희망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변경전: 이철(책임운용역), 송우언, 박시은(부책임운용역) -변경후: 박시은(책임운용역), 최지호(부책임운용역)
2026.04.15	1.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명칭 변경 변경전: 신한스마트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파생형] 변경후: 신한SOL코스피2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파생형] 2. 소규모 임의해지에 따른 전환대상 투자신탁 삭제(신한에너지&농산물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채권-파생형])
2026.07.31	1. 전환대상투자신탁 명칭 변경 -변경전: 신한미국증권자투자신탁(H)[주식] -변경후: 신한미국코어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H)[주식] 2. 전환대상 투자신탁(신한미국증권자투자신탁(H)[주식]) 환매주기 단축
2026.08.19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 1) 신한Tops아름다운SRI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변경전: 이철(책임운용역), 박시은(부책임운용역) -변경후: 이철(책임운용역), 박시은, 윤장한(부책임운용역) 2) 신한프레스티지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변경전: 이철(책임운용역), 박시은(부책임운용역) -변경후: 이철(책임운용역), 박시은, 윤장한(부책임운용역)
2026.08.21	전환대상투자신탁 명칭 변경 -변경전: 신한중국본토증권자투자신탁제1호(H)[주식] -변경후: 신한중국본토코어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제1호(H)[주식]
2026.09.18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 1) 신한좋은아침희망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변경전: 박시은(책임운용역), 최지호(부책임운용역) -변경후: 김한솔(책임운용역), 김일곤(부책임운용역) 2) 신한프레스티지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변경전: 이철(책임운용역), 박시은, 윤장한(부책임운용역) -변경후: 이철(책임운용역), 윤장한(부책임운용역) 3) 신한패러다임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변경전: 정성한(책임운용역), 김한솔, 박시은(부책임운용역) -변경후: 정성한(책임운용역), 김한솔, 이철(부책임운용역) 4) 신한Tops아름다운SRI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변경전: 이철(책임운용역), 박시은, 윤장한(부책임운용역) -변경후: 이철(책임운용역), 윤장한(부책임운용역)

주1) 상기 집합투자기구의 연혁은 최초 설정일을 포함하여 최근 5년 동안의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신탁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

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신한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TP타워 23~26층 (대표전화 : 02-767-5777, 홈페이지 : www.shinhanfund.com)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문 회사로부터의 투자자문]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투자자문회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투자자문회사를 선정할 시 그 보수는 집합투자업자의 보수로부터 지급합니다(모투자신탁의 경우 관련 자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의 보수).

②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의 투자자문회사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습니다.

*투자자문회사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투자자문회사의 업무 내용은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해당 펀드	신한Tops아름다운SRI증권모투자신탁[주식]
회사명	지속가능 금융센터 주식회사
회사의 개요	2002.00.00 "이에프 컨설팅" 설립 2015.01.22 "지속가능금융센터" 법인 신설 2016.12.15 (주)서스틴베스트 자회사 편입
투자자문회사의 업무범위	상장기업의 ESG(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기업지배구조)) 평가 및 분석 업무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26.08.31. 현재)

가. 운용전문인력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은 아래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과 같습니다.

* 신한중은아침희망증권모투자신탁[주식]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주식형)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한솔	1990	책임운용역	38개	10,849억원	111.58%	83.84%	102.89%	72.36%	3년 6개월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경제학과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연금솔루션센터(18.04~19.01)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리테일영업본부(19.01~21.12) - 신한자산운용 알파운용센터(22.01~24.10) - 신한자산운용 주식투자운용본부 (24.11~현재)								
김일곤	1999	부책임운용역	0개	억원	-	-	102.89%	72.36%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토러스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2023.08-2024.01) - DB증권 리서치센터(2024.09-2025.02) - 신한자산운용 주식운용2팀(2026.01 - 현재)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2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상기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주식운용2팀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위의 수치 산정 시 모태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신한Tops아름다운SRI증권모투자신탁[주식]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주식형)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철	1980	책임운용역	14개	1,957억원	119.39%	82.06%	102.89%	72.36%	11년 6개월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 신영자산운용 리스크관리본부 (2008.02 - 2010.04) - 신영자산운용 운용지원팀 (2010.05 - 2015.03) - 신영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2015.04 - 2025.02) - 신한자산운용 주식운용1팀 (2025.03 - 현재)								
윤장한	1991	부책임운용역	21개	2,738억원	126.28%	87.38%	102.89%	72.36%	3년 3개월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한화생명 투자사업본부 (17.07~18.06) - KB증권 리서치센터 (18.07~20.08)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주식리서치팀 (20.09~22.12) - 신한자산운용 주식운용2팀 (23.01~26.06) - 신한자산운용 주식운용1팀 (26.06~현재)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1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상기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주식운용1팀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위의 수치 산정 시 모태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6) 지속가능금융관련서비스회사인 지속가능 금융센터 주식회사로부터 기업정보분석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 신한프레스티지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주식형)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철	1980	책임운용역	14개	1,957억원	119.39%	82.06%	102.89%	72.36%	11년 6개월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 신영자산운용 리스크관리본부 (2008.02 - 2010.04) - 신영자산운용 운용지원팀 (2010.05 - 2015.03) - 신영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2015.04 - 2025.02) - 신한자산운용 주식운용1팀 (2025.03 - 현재)								

	1991	부책임운영역	21개	2,738억원	126.28%	87.38%	102.89%	72.36%	3년 3개월
윤장한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한화생명 투자사업본부 (17.07~18.06) - KB증권 리서치센터 (18.07~20.08)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주식리서치팀 (20.09~22.12) - 신한자산운용 주식운용2팀 (23.01~26.06) - 신한자산운용 주식운용1팀 (26.06~현재)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1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상기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주식운용1팀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신한패러다임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주식형)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정성한	1976	책임운영역	25개	7,068억원	110.13%	97.07%	102.89%	72.36%	22년 6개월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한화생명보험 증권시장사업부 주식운용팀 (04.02-07.05) - 신영자산운용 자산운용본부 주식운용팀 (07.06-11.07) - 케이원투자자문 주식운용본부 (11.08-14.08)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액티브운용실 실장(14.09-19.07)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알파밸류운용실 실장(19.07-20.01)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알파운용센터 센터장(20.01-21.01) - 신한자산운용 알파운용센터 센터장(21.01-24.10) - 신한자산운용 주식투자운용본부 본부장(24.10-현재)								
김한솔	1990	부책임운영역	38개	10,849억원	111.58%	83.84%	102.89%	72.36%	3년 6개월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경제학과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연금솔루션센터(18.04~19.01)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리테일영업본부(19.01~21.12) - 신한자산운용 알파운용센터(22.01~24.10) - 신한자산운용 주식투자운용본부 (24.11~현재)								
이철	1980	부책임운영역	14개	1,957억원	119.39%	82.06%	102.89%	72.36%	11년 6개월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 신영자산운용 리스크관리본부 (2008.02 - 2010.04) - 신영자산운용 운용지원팀 (2010.05 - 2015.03) - 신영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2015.04 - 2025.02) - 신한자산운용 주식운용1팀 (2025.03 - 현재)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1팀, 주식운용2팀, 주식투자운용본부장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상기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주식운용1팀, 주식운용2팀, 주식투자운용본부장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위의 수치 산정 시 모태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2026.08.31. 현재): 해당사항 없음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1)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변경 내역은 아래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변경 내역과 같습니다.

* 신한중은아침희망증권모투자신탁[주식]

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홍성원	2022.04 ~ 2024.12
김주영	2024.12 ~ 2025.04
이철	2025.04 ~ 2026.01
박시은	2026.01 ~ 2026.09
김한솔	2026.09 ~ 현재
부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윤종원	2024.12 ~ 2025.04
송우언	2025.04 ~ 2026.01
박시은	2025.07 ~ 2026.01
최지호	2026.01 ~ 2026.09
김일곤	2026.09 ~ 현재

주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입니다.

* 신한Tops아름다운SRI증권모투자신탁[주식]

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김형관	2021.12 ~ 2024.12
고영훈	2024.12 ~ 2025.09
이철	2025.09 ~ 현재
부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서태원	2024.12 ~ 2025.03
이유정	2025.03 ~ 2025.09
송우언	2025.09 ~ 2026.01
박시은	2026.01 ~ 2026.09
윤장한	2026.08 ~ 현재

주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입니다.

* 신한프레스티지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

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최준석	2022.04 ~ 2024.12
고영훈	2024.12 ~ 2025.09
이철	2025.09 ~ 현재
부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서태원	2024.12 ~ 2025.03

이유정	2025.03 ~ 2025.09
송우연	2025.09 ~ 2026.01
박시은	2026.01 ~ 2026.09
윤장한	2026.08 ~ 현재

주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입니다.

*** 신한패러다임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부책임용역	운용 기간
이유라	2018.07 ~ 2025.11
박시은	2025.02 ~ 2026.09
김한솔	2025.11 ~ 현재
이철	2026.09 ~ 현재

주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형(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전환형

주)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구조 등 주요 사항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좋은아침희망증권모투자신탁[주식]
신한프레스티지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
신한Tops아름다운SRI증권모투자신탁[주식]
신한패러다임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신한좋은아침희망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신한좋은아침희망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종류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신한좋은아침희망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종류A-e) (수수료선취-온라인)
신한좋은아침희망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종류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신한좋은아침희망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종류A-u) (수수료선취-오프라인-전환가능1)
신한좋은아침희망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종류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신한좋은아침희망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종류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신한좋은아침희망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종류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신한좋은아침희망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종류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신한좋은아침희망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종류C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신한중은아침희망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종류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신한중은아침희망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종류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신한중은아침희망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종류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기관)
신한중은아침희망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종류C-i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신한중은아침희망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종류C-r)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신한중은아침희망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종류C-r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신한중은아침희망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종류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신한중은아침희망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종류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제한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 (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선취-오프라인-전환가능1(A-u)	제한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제한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되는 날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되는 날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되는 날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 되는 날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전환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 (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기관(C-i)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50억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i2)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고자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자금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 법 제8조제7항에 의한 신탁업자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 투자자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 위 종류 수익증권들은 종류 A-u 수익증권으로 판매회사를 통해 전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종류 A-u 수익증권으로의 전환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1.매입, 환매 및 전환기준 다. 종류 A-u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종류별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별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선 취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6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6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후 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수수료미 징구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6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6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 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S 관련 클래스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다른 클래스(가입자격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타	보수체감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무권유저비용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	기관투자가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전환가능1	신한 엠프렐러 클래스 펀드간에 전환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 전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전환형 구조로,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이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해 다음 각호의 종목간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환형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A-u : 신한 엠프렐러 클래스 펀드

	펀드명
1	신한BEST개인용MMF제1호
2	신한베스트크레딧단기증권자투자신탁[채권]
3	신한좋은아침희망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4	신한중국의꿈증권자투자신탁제1호(H)[주식]
5	신한TopsValue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6	신한브릭스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재간접형]
7	신한중국의꿈증권자투자신탁제2호(H)[주식]
8	신한미국코어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H)[주식]
9	신한동남아시아증권자투자신탁제1호(H)[주식]
10	신한SOL코스피2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파생형]
11	신한브릭스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
12	신한골드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13	신한친디한증권자투자신탁(H)[주식]
14	신한차이나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
15	신한중국본토코어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제1호(H)[주식]
16	신한유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

상기 집합투자증권 중 종류 A-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전환대상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환대상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전환대상 집합투자기구명		주요투자대상 및 전략
신한BEST개인용MMF제1호	주요투자대상	만기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만기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기업어음증권
	주요투자전략	자산의 대부분을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여 최대한 안전성을 추구
	주요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증권 등 가격변동위험

신한BEST개인용MMF제1호		등이 존재 합니다.
신한베스트크레딧단기증권자투자신탁[채권]	주요투자대상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주요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인 신한베스트크레딧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주로 A-등급 이상의 채권, A2-등급 이상의 기업어음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 등 가격변동위험 등이 존재 합니다.
신한좋은아침희망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주요투자대상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주요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업종대표 기업으로 실적 안정성이 높은 기업 혹은 업종 내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거나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주식 등에 투자하는 신한좋은아침희망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100%이하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 사회,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해당 기업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신한Tops아름다운SRI증권모투자신탁[주식]과 역사적으로 높은 배당수익률을 유지해 왔거나,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향후 높은 배당금을 지불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신한프레스티지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각 50%이하,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우량주 등에 투자하는 신한패러다임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30%이하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증권 등 가격변동위험과 국내 주식 시장 위험 등이 존재합니다.
신한중국의꿈증권자투자신탁제1호(H)[주식]	주요투자대상	중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주요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중국 관련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들의 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주요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중의 하나인 신한중국본토코어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중국 위안화 및 외국 통화로 거래되는 중국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원화대비 외국 통화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국가위험,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 위험 등이 존재합니다.
신한TopsValue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주요투자대상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주요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주로 저PER(주가수익배율), 저PBR(주당순자산 가치), 고배당의 특징을 갖고 있는 기업가치 우량 종목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합니다. 투자신탁재산의 40% 이하를 채권 및 어음,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증권 등 가격변동위험과 국내 주식 시장 위험 등이 존재합니다.
신한브릭스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재간접형]	주요투자대상	외국집합투자증권 50% 이상 채권 50% 이하
	주요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주식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입니다.
	주요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미국 달러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등의 외국통화로 거래되는 브릭스 국가 관련 해외 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국가위험, 재간접투자위험,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 위험 등이 존재합니다.

신한중국의꿈증권자투자신탁 제2호(H)[주식]	주요투자대상	중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주요투자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중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들의 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주요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중의 하나인 신한중국본토코어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중국 위안화 및 외국 통화로 거래되는 중국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원화대비 외국 통화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국가위험,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 위험 등이 존재합니다.
신한미국코어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H)[주식]	주요투자대상	미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주요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미국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투자신탁재산의 10% 이하를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의 유동성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미국 달러화로 거래되는 미국 관련 주식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국가위험,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 위험 등이 존재합니다.
신한동남아시아증권자투자신탁제1호(H)[주식]	주요투자대상	동남아시아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주요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주식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장내외파생상품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헤지를 실행하며 투자신탁재산의 10% 이하를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의 유동성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미국 달러화로 표시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당 국가의 통화로 거래되는 동남아시아 관련 주식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국가위험,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 위험 등이 존재합니다.
신한SOL코스피2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파생형]	주요투자대상	모투자신탁에 90% 이상 투자
	주요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주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관련파생상품에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을 채권, 어음 및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주요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국내주식 관련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증권 등 가격변동위험과 국내 주식 시장 위험,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등이 존재합니다.
신한브릭스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	주요투자대상	중남미, 유럽신흥국가, 인도, 중국 관련 주식등에 각각 투자하는 4개 국가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주요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중남미, 유럽 신흥국가, 인도, 중국의 주식 등에 각각 투자하는 각 지역별 주식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투자신탁재산의 10% 이하를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의 유동성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지역별 모투자신탁은 미국 달러화 및 해당 국가의 통화로 거래되는 중남미, 유럽 신흥국가, 인도 및 중국 관련 주식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국가위험, 외국세

신한브릭스플러스증권투자자신탁(H)[주식]		법에 의한 과세 위험 등이 존재합니다.
신한골드증권투자신탁제1호 [주식]	주요투자대상	금광업 관련 주식
	주요투자전략	MarketVector Global Gold Miners Index(USD)를 추종함과 동시에 금 실물의 거래 없이 통장으로 자유로이 입출금할 수 있는 골드 बैं킹 상품인 신한은행 골드리치(Gold Riche) 상품에 주로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광업 관련 기업 및 금 관련 ETF를 포함한 집합투자증권, 금 선물 등 금 관련 장내파생상품, 금 현물 등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미국 달러화 등의 외화로 거래되는 금광업 관련 주식 및 미국 달러화로 표시되는 금관련 지수와 연계된 골드리치 상품 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국가위험,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 위험 등이 존재합니다.
신한친디한증권투자신탁 (H)[주식]	주요투자대상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100% 이하 투자
	주요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 등록되어 있는 증권 및 국내 증권 등에 투자하여 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을 추구하는 4개의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각각 한국, 중국, 인도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들의 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주요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2개 지역별 해외 주식 모투자신탁은 미국 달러화 및 해당 국가의 통화로 거래되는 인도 및 중국 관련 주식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국가위험,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 위험 등이 존재합니다.
신한차이나인덱스증권투자자신탁(H)[주식-파생형]	주요투자대상	홍콩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식을 대표하는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주요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홍콩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식을 대표하는 주식 및 주가지수선물,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홍콩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식을 대표하는 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인 신한차이나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 [주식-파생형]은 홍콩 상장 중국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해외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거래상 대방 및 신용위험, 국가 위험,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 위험 등이 존재합니다.
신한중국본토코어액티브증권 투자신탁제1호(H)[주식]	주요투자대상	중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주요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 및 중국 주식 시장에 존재하는 투자기회 등을 고려하여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중국 국내시장 및 중국 이외 역외시장에 상장(혹은 상장을 위한 공모주 포함)된 중국 회사의 주식 또는 주요 수익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하 “중국 관련 주식”이라 한다)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투자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고자 하며, 투자전략의 일부로 중국 시장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 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중국 위안화 및 외국 통화로 거래되는 중국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국가위험,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 위험 등이 존재합니다.

신한유로인덱스증권투자신탁(H)[주식-파생형]	주요투자대상	유로존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주요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유로존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주식 및 주가지수선물,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유로존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인 신한유로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은 유로화로 거래되는 유럽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해외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거래상 대방 및 신용위험, 국가 위험,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 위험 등이 존재합니다.

※ 전환대상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회사는 위의 전환대상 투자신탁을 선별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펀드로의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투자대상 및 전략	
신한Tops아름다운SRI증권모투자신탁[주식]	주요투자대상	국내 주식 60%이상 투자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기업의 재무적 요인은 물론,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경영 및 경제의 질적 경영 등 비재무적 요인에 의해서 분석해 볼 때 지속가능성에 있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은 주로 환경, 사회,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해당 기업 주식(이하 "SRI 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합니다. 합당한 종목 선별을 위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심사와 재무적 판단 분석을 통해 종목군을 평가·엄선하여 투자합니다. 투자신탁재산의 40%이하를 채권 및 어음,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신한좋은아침희망증권모투자신탁[주식]	주요투자대상	국내주식 60% 이상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업종대표 기업으로 실적 안정성이 높은 기업 혹은 업종 내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거나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주식 등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40% 이내에서 채권 및 어음,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신한패러다임코리아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주요투자대상	국내주식에 60% 이상 투자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우량주 등에 투자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산업 패러다임(K-소비재, AI, 주주가치, 바이오, 친환경, 산업재, K-컬처, 플랫폼, 씨크리컬 등)의 변화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Bottom-up 리서치를 통한 펀더멘탈 분석 중심으로 선별된 종목들에 투자합니다.
신한프레스티지고배당증 권모투자신탁[주식]	주요투자대상	국내주식에 70%이상 투자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은 역사적으로 높은 배당수익률을 유지하였거나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의거하여 향후 높은 배당금을 지불할 것으로 기대되는 회사의 보통주, 우선주 등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며, 투자신탁재산의 40% 이하를 채권 및 어음,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자산 유형	투자비율 (%) (투자신탁재산 총액 대비)	주요 내용
1. 집합투자증권	100% 이하	신한중은아침희망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
1. 집합투자증권	각 50% 이하	신한Tops아름다운SRI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
1. 집합투자증권	각 50% 이하	신한프레스티지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
1. 집합투자증권	30% 이하	신한패러다임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집합투자증권	50% 초과	상기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2.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의 예치	10% 이하	법 시행령 제3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예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3.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한도 및 제한의 예외>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

신한Tops아름다운SRI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자산 유형	투자비율 (%) (투자신탁재산 총액 대비)	주요 내용
1. 주식	60% 이상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과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2. 채권	40% 이하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다만, 상기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 어음 등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인 것에 한한다. 다만, 이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5.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무증권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무증권 총액의 100% 이하.
6. 집합투자증권 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

		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7.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및 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8.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
9.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증권 총액의 50% 이하
10. 증권의 차입	20%이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11.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 법 시행령 제3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12.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파생상품(금리스왑거래 등 포함)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 이하로 한다.

<한도 및 제한의 예외>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7호 내지 제10호 및 제17조 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1) 증권의 대여: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증권의 차입: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

을 진행할 수 있음

신한중은아침희망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자산 유형	투자비율 (%) (투자신탁재산 총액 대비)	주요 내용
1. 주식	60% 이상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과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2. 채권	40% 이하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다만, 상기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 어음 등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인 것에 한한다. 다만, 이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5.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 산출근거가 되는 채무증권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무증권 총액의 100% 이하.
6. 집합투자증권 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7.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및 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8. 증권외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
9.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증권 총액의 50% 이하
10. 증권외 차입	20%이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11.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 법 시행령 제3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12.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파생상품(금리스왑거래 등 포함)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 이하로 한다. <한도 및 제한의 예외>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7호 내지 제10호 및 제17조 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1) 증권의 대여: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증권의 차입: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신한패러다임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자산 유형	투자비율 (%) (투자신탁재산 총액 대비)	주요 내용
1. 주식	60% 이상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과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2. 채권	40% 이하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

		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다만, 상기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 어음 등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인 것에 한한다. 다만, 이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5.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 산출근거가 되는 채무증권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무증권 총액의 100% 이하.
6. 집합투자증권 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7.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및 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8.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
9.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증권 총액의 50% 이하
10. 증권의 차입	20%이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11.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 법 시행령 제3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12.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파생상품(금리스왑거래 등 포함)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 이하로 한다.		
<한도 및 제한의 예외>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7호 내지 제10호 및 제17조 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1) 증권의 대여: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증권의 차입: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신한프레스티지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자산 유형	투자비율 (%) (투자신탁재산 총액 대비)	주요 내용
1. 주식	60% 이상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과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2. 채권	40% 이하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다만, 상기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 어음 등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인 것에 한한다. 다만, 이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

		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5.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무증권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무증권 총액의 100% 이하.
6. 집합투자증권 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7.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및 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8. 증권외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
9.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증권 총액의 50% 이하
10. 증권외의 차입	20%이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11.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 법 시행령 제3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12.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파생상품(금리스왑거래 등 포함)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 이하로 한다. <한도 및 제한의 예외>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계약 제16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계약 제16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계약 제16조 제7호 내지 제10호 및 제17조 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1) 증권의 대여·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증권의 차입: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 예외
이해관계인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계열회사 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모투자신탁 투자제한]

신한Tops아름다운SRI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구분	내용	적용 예외
이해관계인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1.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2.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종목 투자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에 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계열회사 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투자	-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 {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한도초과	<투자한도 초과 예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계약 제16조 제7호 내지 제10호 및 제17조 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신한중은아침희망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구분	내용	적용 예외
이해관계인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1.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2.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종목 투자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에 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계열회사 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투자	-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 {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한도초과	<투자한도 초과 예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계약 제16조 제7호 내지 제10호 및 제17조 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신한패러다임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구분	내용	적용 예외
이해관계인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 (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 예금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1.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2.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종목 투자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에 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계열회사 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투자	-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 {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한도초과	<투자한도 초과 예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계약 제16조 제7호 내지 제10호 및 제17조 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신한프레스티지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구분	내용	적용 예외
이해관계인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 (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 예금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1.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2.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종목 투자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계열회사 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투자	-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 {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한도초과	<투자한도 초과 예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계약 제16조 제7호 내지 제10호 및 제17조 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업종대표 기업으로 실적 안정성이 높은 기업 혹은 업종 내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거나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주식 등에 투자하는 신한중은아침희망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100%이하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 사회,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해당 기업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신한Tops아름다운SRI증권모투자신탁[주식]과 역사적으로 높은 배당수익률을 유지하였거나,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향후 높은 배당금을 지불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신한프레스티지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각 50%이하,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우량주 등에 투자하는 신한패러다임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30%이하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2) 상세 투자전략

1) 주식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비교지수의 업종구성비를 추종하는 업종 배분 전략을 지양하고, 실적 안정성이 높거나,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거나 저평가된 기업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투자
- 리서치와 기업탐방을 통한 철저한 Bottom-Up 투자

2) 주식모투자신탁의 주식 선정 기준

- 업종 내 실적 안정성이 높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업종 대표 기업
-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우량주
- 미래성장성이 높아 향후 현재가치보다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기업
- 지속적으로 양호한 현금흐름을 창출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
- 재무안정성이 높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

- 사회적 책임과 이익 성장성 양면에서 지속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신한좋은아침희망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주요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업종대표 기업으로 실적 안정성이 높은 기업 혹은 업종 내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거나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주식 등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40% 이내에서 채권 및 어음,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신한Tops아름다운SRI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주요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주로 환경, 사회,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해당 기업 주식(이하 "SRI 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합니다. 합당한 종목 선별을 위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심사와 재무적 판단 분석을 통해 종목군을 평가·업선하여 투자합니다. 투자신탁재산의 40%이하를 채권 및 어음,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신한프레스티지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주요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역사적으로 높은 배당수익률을 유지하였거나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의거하여 향후 높은 배당금을 지불할 것으로 기대되는 회사의 보통주, 우선주 등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며, 투자신탁재산의 40% 이하를 채권 및 어음,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신한패러다임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주요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우량주 등에 투자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산업 패러다임(K-소비재, AI, 주주가치, 바이오, 친환경, 산업재, K-컬처, 플랫폼, 씨크리컬 등)의 변화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Bottom-up 리서치를 통한 펀더멘탈 분석 중심으로 선별된 종목들에 투자합니다.

(3) 위험관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시장위험(Market Risk), 신용위험(Credit Risk),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위험관리방법을 실행합니다.

- 사전적으로 검증된 투자 Universe(종목후보군) 종목 투자여부 점검
- 펀드별 추적오차(Tracking Error)점검
- 종목별 보유한도준수여부 점검
- 펀드별 유동성 점검 등

(4)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아래와 같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변경 및 투자자에게 공시 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 KOSPI종합지수*95% + 콜금리*5%

※ 집합투자업자의 내부 비교지수 선정 기준의 변경으로 해당 펀드의 비교지수는 다음과 같이 변경 적용 되었습니다.

설정일 이후 - 2004.04.11 : 비교지수 없음

2004.04.12 이후 : KOSPI종합지수*95% + 콜금리*5%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하므로 국내 주식시장 성장을 측정하는 지수인 KOSPI를 비교지수의 95% 비중으로 적용하고, 대표적인 유동성 지표인 콜금리를 비교지수의 5% 비중으로 적용합니다.

- KOSPI종합지수

KOSPI 지수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상장기업의 전 종목을 대상으로 한 주식 변동을 시가총액방식으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비교하여 작성한 지표로서, 주식의 전반적인 동향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 콜금리

금융기관간 영업활동 과정에서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30일 이내의 초단기로 빌려주고 받는 것을 “콜”이라 부르며, 이 때 적용되는 금리를 콜금리라 합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주된 투자대상인 국내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에 대한 기술이며, 자투자신탁의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주요 내용
원본 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증권 등 가격변동위험	투자대상 증권의 발행회사 영업환경, 재무상황, 신용상태 악화 및 시장에서의 증권 수급상황 등의 이유로 인해 투자대상 증권의 가격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시장의 지정학적 위험 및 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과세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 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자산의 예 :해외투자 시 이익 및 환차손익, 채권투자 시 이자 수익 등 *비과세 대상 자산의 예: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해당 증권 시장 전체의 가격하락 또는 이자율 변동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시장위험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증권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 증권가격의 등락을 초래하며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개방형 펀드 구조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펀드로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환매 시점의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의 매도 가격이 결정되며, 이로 인한 손익은 환매분 외 기타 수익자에게 동일하게 귀속됩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잔존만기가 길어질 경우 해당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적은 원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주요 내용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관련 거래상대방 또는 보유하는 국내외 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TF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인 ETF(Exchange Traded Funds)는 상장 폐지위험,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추적오차발생위험, 거래규모 및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른 유동성위험, 종가와 NAV(순자산)의 괴리위험, 설정/환매시 세금부담위험, 추적대상지수의 산출방식 변경 및 중단위험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펀드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SRI주식의 가격변동위험	이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SRI 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모투자신탁의 수익은 국내 주식시장의 대표 지수들의 변동과 별개로 투자대상인 SRI 주식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더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주요 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평가된 주식들의 경우 유동성이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유동성도 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매에 응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이러한 낮은 유동성은 단기기간내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투자신탁 기준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수 도 있습니다.
환매 중 재산가치 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고 일정기간의 환매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기간 동안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이 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 혹은 일정기간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환매연기위험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자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자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자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등.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 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적어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권 대차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또는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 중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대상기준 중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은 **38.94%이며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설정 3년 경과 펀드는 최근 3년간 일간수익률을 토대로 97.5% VaR 모형을 사용한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에 따라 위험등급을 분류한 후, 신용, 유동성, 환율 등의 위험을 반영하여 최종 위험등급을 산정합니다.

<위험등급 변경내역>

투자위험등급	기간	변경사유
1 등급	2003.12-2016.06	
3 등급	2016.07-2016.12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 적용에 따른 위험등급 부여
2 등급	2016.12-2018.12	실제 수익률 변동성 확대에 따라 위험등급 상향
3 등급	2018.12-2020.12	실제 수익률 변동성 축소에 따라 위험등급 하향
2 등급	2020.12-현재	실제 수익률 변동성 확대에 따라 위험등급 상향

※ 상기 기간은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변동성을 측정하기 위한 펀드결산일 기준(해당기간 내 각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의 수익률 변동성 측정)의 기간을 의미하며, 변경된 위험등급은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실제 수익률 변동성의 결과계산에 따라 부여되는 위험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기준(97.5% VaR 모형* 기준)

등급	1(고위험)	2	3	4	5	6(저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11.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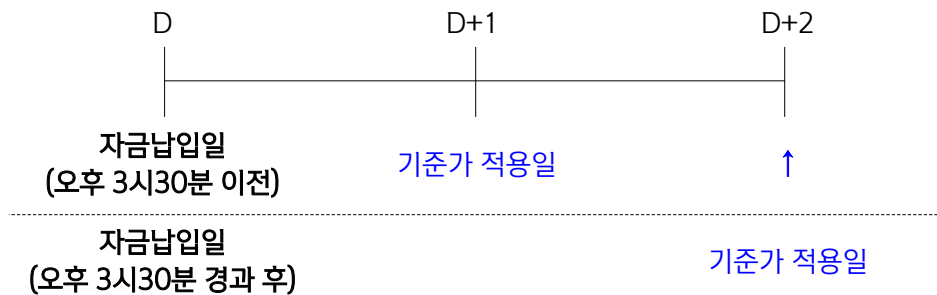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제한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 (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선취-오프라인-전환가능1(A-u)	제한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제한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되는 날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되는 날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되는 날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 되는 날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전환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 (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기관(C-i)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50억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i2)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집 합투자증권에 가입하고자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자금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 자기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 연금(C-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 금(C-r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 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 w)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 법 제8조제7항에 의한 신탁업자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 투자자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클래스를 취급하 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A. 15시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 (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B. 15시30분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 (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각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각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C.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수 청구 : 집합투자업자는 자투자신탁의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할 사유가 없는 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펀드 내 전환 (보수인하 종류 수익증권 간의 전환)

(1) 수익증권의 전환방법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전환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이하 "최초매수일"이라한다)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청구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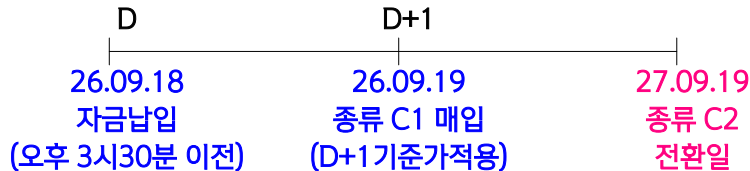
1.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종류 C1 수익증권을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종류 C2 수익증권을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3.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종류 C3 수익증권을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4.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 종류 C4 수익증권을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전환

상기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상기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하며,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 처리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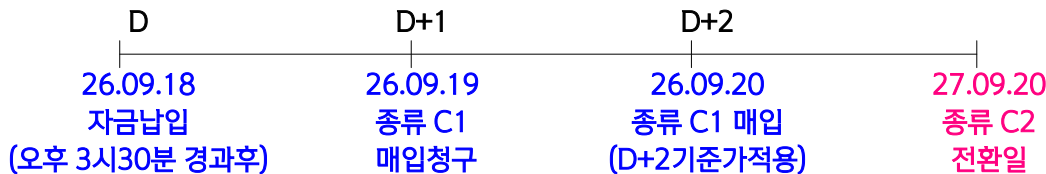
* 다만, 2010년 10월 18일 기준 종류 C1 수익증권은 수익자의 당해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수익 증권에 총 보유기간에 따라 일괄하여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자동으 전환합니다. 이후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 방법에 따라 전환됩니다.

(전환의 예시) 수익자가 2026년 9월 18일에 최초로 종류 C1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 해당 전환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아래 예시는 기준가를 1좌당 1원으로 계산하였으며, 해당 기간동안 기준가 변동이 없음을 가정합니다.

(1) 오후 3시30분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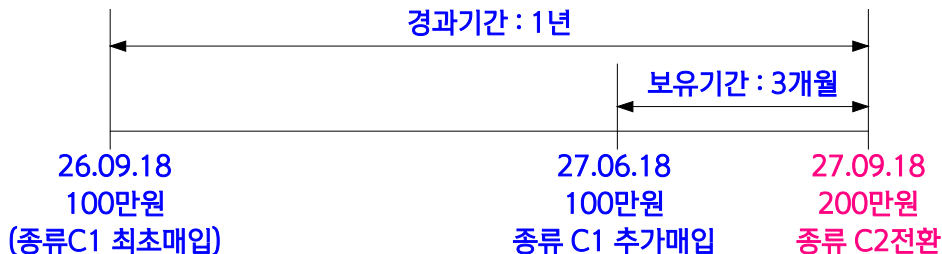
(2) 오후 3시30분 경과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추가설정과 관계없이 최초매입일을 기준으로 경과기간을 계산합니다.

예1) 종류 C1 수익증권 최초 매입일 이후 해당 전환시점 전 추가설정이 일어나는 경우

-> 추가 설정일과 관계없이 종류 C1 수익증권 최초 매입일 기준으로 경과기간 계산



* 27.06.18에 추가로 투자한 100만원은 경과기간이 3개월이지만, 해당 수익증권의 최초 매입일을 기준으로 전환일을 산정하기 때문에 최초매입분과 함께 전환

예2) 투자기간 중 수익자의 청구로 인하여 일부(분할)환매가 발생한 경우

-> 중도 환매와 관계없이 최초 매입일을 기준으로 경과기간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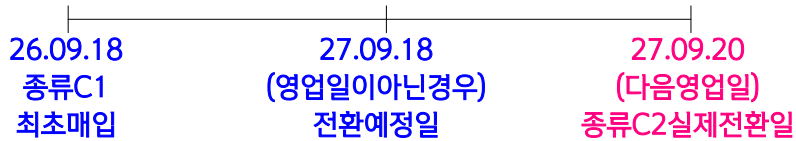


실제 전환기준 기간을 채운 금액은 10만원이지만, 추가 매입분도 최초매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함께 전환

< 예외 >

예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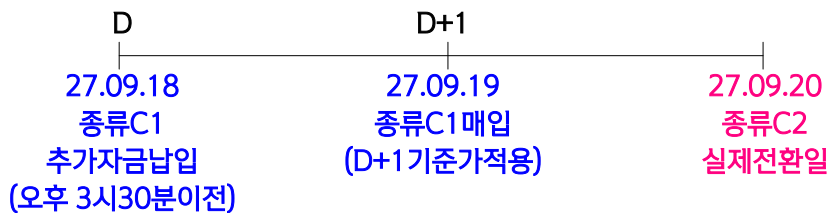
해당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경우 예정전환일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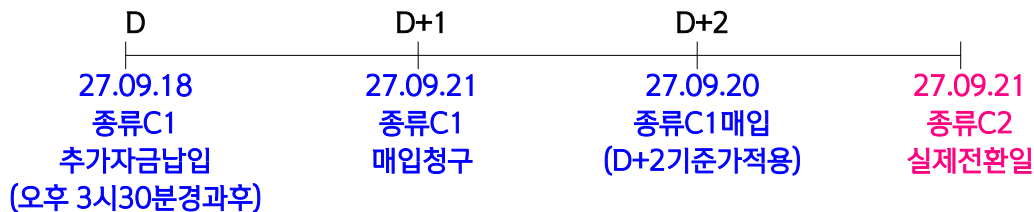
예외 2.

수익증권의 매입요청에 따라 해당 수익증권의 매입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전환하지 아니하고 매입절차가 진행중인 당해 수익증권의 매입일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할 수 있습니다.

예1) 오후 3시30분 이전에 해당계좌에 추가자금을 납입하여, 예정전환일이 매입절차가 진행중인 09월 18일과 09월 19일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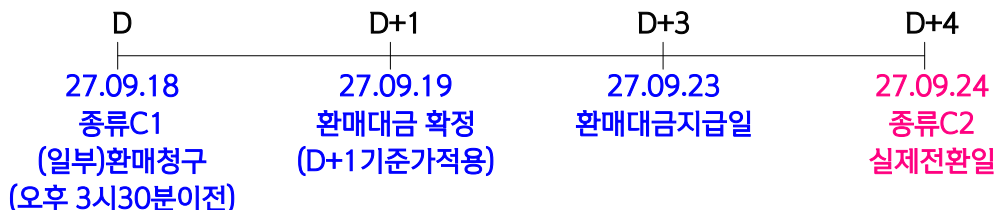
예2) 오후 3시30분 경과후에 해당계좌에 추가자금을 납입하여, 예정전환일이 매입절차가 진행중인 09월 18일과 09월 20일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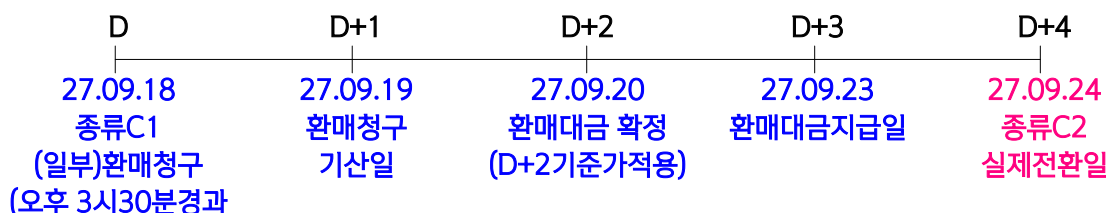
예외 3.

수익자의 (일부)환매청구에 따라 해당 수익증권의 (일부)환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전환하지 아니하고, 당해 (일부)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할 수 있습니다.

예1) 오후 3시30분 이전에 (일부)환매를 청구하여, 예정전환일이 (일부)환매절차가 진행중인 09월 18일과 09월 23일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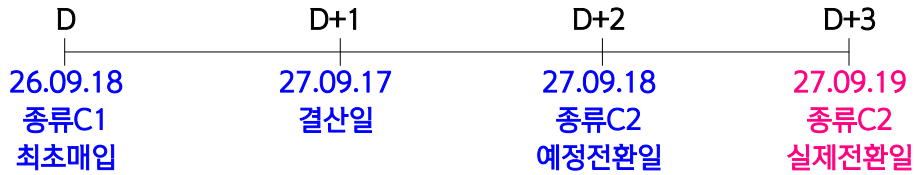


예2) 오후 3시30분 경과후에 (일부)환매를 청구하여, 예정전환일이 (일부)환매절차가 진행중인 09월 18일과 09월 24일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4.

전환일 전일이 결산일(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일)인 경우, 예정 전환일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증권 전환시 기준가격 등

수익증권 전환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판매회사는 위 전환을 적용함에 있어 그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 종류 A-u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 ① 각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는 종류 A-u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류 A-u 수익증권에서 그 외 종류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② 수익증권의 전환 청구는 최초 매수일로부터 집합투자계약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각 종류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합니다.
다만, 나. 펀드 내 전환 (보수인하 종류 수익증권 간의 전환)에 따라 전환된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 종류 C1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집합투자계약 제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류 A-u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청구 시, 전환 청구 수익증권의 집합투자 계약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선취판매수수료율이 종류 A-u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율 보다 낮을 경우 판매회사는 해당 선취판매수수료율의 차이만큼을 전환대상금액을 기준으로 수익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에 따른 선취판매수수료율은 해당 차이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⑤ 집합투자계약 제3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류 A-u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 2. 종류 A-u 수익증권으로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전환 관련 세부사항은 판매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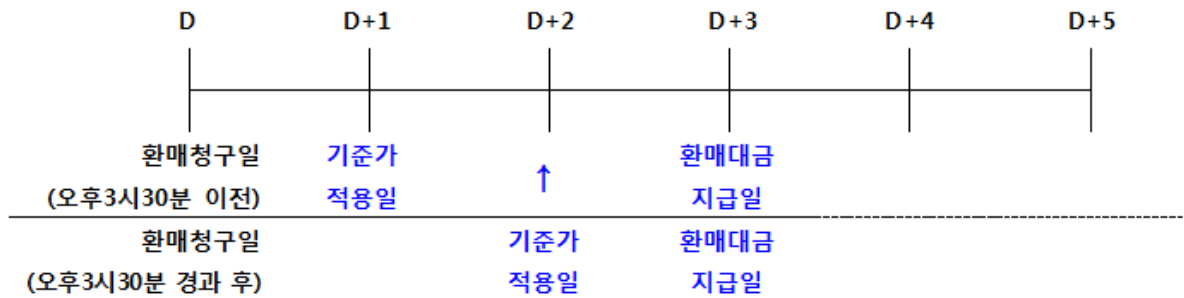
라.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통해 직접 환매하거나, 판매회사가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환매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A. 15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B. 15시30분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각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각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C.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 청구: 집합투자업자는 모두자신탁에 환매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이 투자신탁의 자금으로 환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날에 모두자신탁에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30분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30분경과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2영업일 전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2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의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 법 제237조와 시행령 제258조의 절차에 따라 환매할 수 있습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

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그밖에 ①부터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시행령 제259조의 절차에 따라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마. 펀드 간 전환 (엄브렐라 클래스 펀드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과 같은 전환형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간의 전환과 관련하여 별도의 횡수제한은 없으며, 전환 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전환대상 투자신탁>

- 종류 A~u : 신한 엄브렐라 클래스 펀드

	펀드명
1	신한BEST개인용MMF제1호
2	신한베스트크레딧단기증권자투자신탁[채권]
3	신한좋은아침희망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4	신한중국의꿈증권자투자신탁제1호(H)[주식]
5	신한TopsValue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6	신한브릭스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재간접형]
7	신한중국의꿈증권자투자신탁제2호(H)[주식]
8	신한미국코어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H)[주식]
9	신한동남아시아증권자투자신탁제1호(H)[주식]
10	신한SOL코스피2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파생형]
11	신한브릭스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
12	신한골드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13	신한친디한증권자투자신탁(H)[주식]
14	신한차이나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
15	신한중국본토코어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제1호(H)[주식]
16	신한유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파생형]

상기 집합투자증권 중 [종류 A~u] 집합투자증권 간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전환 절차 및 방법

수익자가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처리 합니다. 이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1) 신한BEST개인용MMF제1호 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전환	제1 영업일(D)	제2영업일(D+1)	제3영업일(D+2)			영업일구분
17시 이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판매회사 영 업일
		전환일				
17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전환일			

2) 신한SOL코스피2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파생형], 신한TopsValue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신한좋은아침희망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전환	제1 영업일(D)	제2영업일(D+1)	제3영업일(D+2)	제4영업일(D+3)		영업일구분
15시30분 이 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한국거래소 개장일
				전환일		
15시30분 경 과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전환일		

3) 신한골드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6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7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전환	제1 영업일(D)	제4영업일(D+3)	제5영업일(D+4)	제6영업일(D+5)	제7영업일(D+6)	영업일구분
17시 이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판매회사 영 업일
				전환일		
17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전환일	

4) 신한동남아시아증권자투자신탁제1호(H)[주식], 신한브릭스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재간접형], 신한브릭스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 신한친디한증권자투자신탁(H)[주식] 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전환	제1 영업일(D)	제4영업일(D+3)	제5영업일(D+4)	제8영업일(D+7)	제9영업일(D+8)	영업일구분
17시 이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판매회사 영 업일
				전환일		
17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전환일	

5) 신한미국코어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H)[주식] 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전환	제1 영업일(D)	제3영업일(D+2)	제4영업일(D+3)	제5영업일(D+4)		영업일구분
----	-----------	------------	------------	------------	--	-------

17시 이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판매회사 영 업일
			전환일			
17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전환일		

6) 신한베스트크레딧단기증권투자신탁[채권] 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전환	제1 영업일(D)	제3영업일(D+2)	제4영업일(D+3)			영업일구분
17시 이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판매회사 영 업일
		전환일				
17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전환일			

7) 신한유로인덱스증권투자신탁(H)[주식-파생형], 신한중국본토코어액티브증권투자신탁제1호(H)[주식], 신한중국의꿈증권투자신탁제1호(H)[주식], 신한중국의꿈증권투자신탁제2호(H)[주식], 신한차이나인덱스증권투자신탁(H)[주식-파생형] 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6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전환	제1 영업일(D)	제4영업일(D+3)	제5영업일(D+4)	제6영업일(D+5)		영업일구분
17시 이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판매회사 영 업일
			전환일			
17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적용일			
				전환일		

(3) 전환시 유의사항

- ①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전환에 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집합투자규약 제3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 ②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전환에 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 판매회사는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 전환시 및 전환후 수익자가 추가로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③ 수익자는 투자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환신청할 수 있으나, 판매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④ 각 판매회사의 전환 가능 대상 투자신탁 판매 여부에 따라 전환 종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전환신청 이전에 각 판매회사의 전환 가능 대상 투자신탁 판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중도환매 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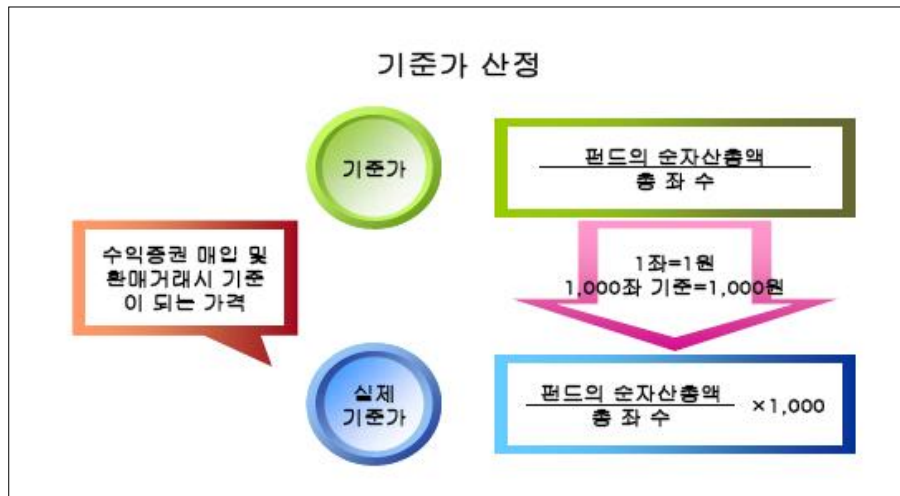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하지 않음)
-	-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중에도 이자수익 등으로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인터넷홈페이지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 :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구분	평가원칙
시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공정가액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합니다.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업자 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시가(공정가액) 평가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구분		평가방법
1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상장 주식의 경우 전날의 가격)
2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외화표시자산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외국 채권평가회사 또는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3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공표하는 가격 (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4	장외파생상품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단, 채권평가회사가 가격제공이 곤란한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5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외화표시자산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외국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6	비상장채권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7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8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가격)
9	외화표시자산의 평가시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로 한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

으셔야 합니다.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제한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 (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 비용(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 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선취-오프라인-전환가능 1(A-u)	제한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1)	제한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2)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되는 날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3)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되는 날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4)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되는 날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 감(C5)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 되는 날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전환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 (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 저비용(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 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기관(C-i)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 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 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50억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i2)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고자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자금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집합 투자기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 금(C-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r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적립금 및 개인퇴직계좌 자금으로서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 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 w)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 법 제8조제7항에 의한 신탁업자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 투자자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클래스를 취급하 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 한 투자자

* 위 종류 수익증권들은 종류 A-u 수익증권으로 판매회사를 통해 전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종류 A-u 수익증권으로의 전환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1.매입, 판매 및 전환기준 다. 종류 A-u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지급시기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00%	-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00% 이내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납입금액의 0.700% 이내	-	
수수료선취-오프라인-전환가능 1(A-u)	납입금액의 0.900% 이내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2)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3)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4)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5)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기관 (C-i)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i2)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r)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re)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0%이내	

* 판매수수료는 위에 기재한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은 판매회사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연간%)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 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 사무 보수	총 보수	(동종 유형총 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비용	합성총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증권 거래 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u>0.670</u>	<u>0.800</u>	<u>0.030</u>	없음	<u>1.500</u>	<u>1.430</u>	0.0041	<u>1.5041</u>	<u>1.5092</u>	0.6006
수수료선취-온라인(A-e)	<u>0.670</u>	<u>0.400</u>	<u>0.030</u>	없음	<u>1.100</u>	<u>1.160</u>	0.0018	<u>1.1018</u>	<u>1.1059</u>	0.5866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u>0.670</u>	<u>0.560</u>	<u>0.030</u>	없음	<u>1.260</u>	-	-	<u>1.260</u>	<u>1.260</u>	-
수수료선취-오프라인-전환가능1(A-u)	<u>0.670</u>	<u>0.900</u>	<u>0.030</u>	없음	<u>1.600</u>	-	0.0038	<u>1.6038</u>	<u>1.6084</u>	0.597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u>0.670</u>	<u>1.500</u>	<u>0.030</u>	없음	<u>2.200</u>	<u>1.590</u>	-	<u>2.200</u>	<u>2.200</u>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u>0.670</u>	<u>1.375</u>	<u>0.030</u>	없음	<u>2.075</u>	-	-	<u>2.075</u>	<u>2.075</u>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u>0.670</u>	<u>1.250</u>	<u>0.030</u>	없음	<u>1.950</u>	-	-	<u>1.950</u>	<u>1.950</u>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u>0.670</u>	<u>1.125</u>	<u>0.030</u>	없음	<u>1.825</u>	-	-	<u>1.825</u>	<u>1.8317</u>	0.611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u>0.670</u>	<u>1.000</u>	<u>0.030</u>	없음	<u>1.700</u>	-	0.0042	<u>1.7042</u>	<u>1.7092</u>	0.6015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u>0.670</u>	<u>0.500</u>	<u>0.030</u>	없음	<u>1.200</u>	<u>1.190</u>	0.0033	<u>1.2033</u>	<u>1.2092</u>	0.601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u>0.670</u>	<u>0.875</u>	<u>0.030</u>	없음	<u>1.575</u>	-	-	<u>1.575</u>	<u>1.575</u>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기관(C-i)	<u>0.670</u>	<u>0.030</u>	<u>0.030</u>	없음	<u>0.730</u>	-	-	<u>0.730</u>	<u>0.730</u>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i2)	<u>0.670</u>	<u>0.010</u>	<u>0.030</u>	없음	<u>0.710</u>	-	-	<u>0.710</u>	<u>0.710</u>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r)	<u>0.670</u>	<u>0.500</u>	<u>0.030</u>	없음	<u>1.200</u>	-	-	<u>1.200</u>	<u>1.200</u>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re)	<u>0.670</u>	<u>0.250</u>	<u>0.030</u>	없음	<u>0.950</u>	-	0.005	<u>0.955</u>	<u>0.9586</u>	0.549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u>0.670</u>	없음	<u>0.030</u>	없음	<u>0.700</u>	-	-	<u>0.700</u>	<u>0.700</u>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u>0.670</u>	<u>0.350</u>	<u>0.030</u>	없음	<u>1.050</u>	-	0.0024	<u>1.0524</u>	<u>1.0571</u>	0.6002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급					-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위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감사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약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보관대리인보수, 법률자문비용, 부동산감정평가보수 등

(주2)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증개수수료, swap 매매수수료, 대차거래비용(대차관련수수료), repo 거래비용(repo 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 매매수수료, 해외파생 등 매매수수료, 해외워런트 등 매매수수료 등

(주3)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증권 거래비용	152,170
금융비용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회계기간 :2024.12.31 - 2025.12.30] 설정전인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추정할 수 없어 기재하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 연율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주5) 총 보수.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6) 합성 총 보수.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자투자신탁의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포함)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7)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단, 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제외)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

(단위:천원)

종류	구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252	410	572	915	1,879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52	410	572	915	1,879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162	279	400	656	1,388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62	279	400	656	1,388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198	330	467	757	1,579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98	330	467	757	1,579
수수료선취-오프라인-전환가능1(A-u)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252	420	593	957	1,978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52	420	593	957	1,97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223	440	649	1,047	2,120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23	440	649	1,047	2,12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123	251	384	664	1,462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23	251	384	664	1,46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160	326	497	857	1,869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60	326	497	857	1,86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기관(C-i)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75	152	233	406	905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75	152	233	406	905

종류	구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i2)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73	148	227	395	881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73	148	227	395	88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122	249	381	659	1,452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22	249	381	659	1,45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e)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98	200	305	530	1,175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98	200	305	530	1,17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72	146	224	389	870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72	146	224	389	87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108	220	336	583	1,289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08	220	336	583	1,289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보수 및 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선취판매수수료 포함, 단, 후취 판매수수료는 제외). 종류 C1과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의 경우는, 전환되는 경우 예상되는 보수 및 비용을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수익률은 5%, 총보수 및 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자투자신탁의 경우 실제 소요되는 비용 반영을 위해 합성 총보수 및 비용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라. 보수 및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

기준지표	보수 산정방식	한도 (%)	산출 주기	지급 시기	지급내역 (직전 회계연도 기준,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	-	-	-	-	-	-	-

※ 위의 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 제1항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수취하는 투자신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이익분배금을 판매 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분배 유보는 2016년 4월 1일 이후에 결산·분배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해당 이익금의 분배 유보로 인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대 효과: 투자신탁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전부 환매 청구가 있을 때에 해당 환매청구 분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는 수익자별 보유 수익증권에 대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시점을 환매시점까지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② 과세시점 지연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시점에 해당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동안 유보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와 같이 과세시점 지연의 효과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경우 수익자별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통하여 과세시점을 확정된 후 수익증권을 추가 매수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방법은 각 판매회사의 수익증권저축약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되므로 각 판매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 및 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5.4% (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 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 법인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퇴직연금제도의 세제(퇴직연금 전용 종류 수익증권만 해당)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A. 세액공제: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 +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 +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B. 과세 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 시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함

C. 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 외 수령의 경우 과세체계가 다름
. 또한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가능함. 연금소득이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대상 금액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중도 해지 시 적용 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22 기(2024.12.31 - 2025.12.30)	삼화회계법인	적정
제 21 기(2023.12.31 - 2024.12.30)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20 기(2022.12.31 - 2023.12.30)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

통합 재무상태표			
항목	제 22 기	제 21 기	제 20 기
	(2025.12.30)	(2024.12.30)	(2023.12.30)
운용자산	31,620,752,817	21,045,115,392	28,217,285,357
증권	31,355,364,919	20,732,142,304	27,941,643,224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265,387,898	312,973,088	275,642,133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58,654,016	8,650,087	215,864,916
자산총계	31,679,406,833	21,053,765,479	28,433,150,273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78,050,389	98,363,960	159,419,773
부채총계	178,050,389	98,363,960	159,419,773
원본	20,157,266,331	23,389,221,907	26,649,411,911
수익조정금	-1,077,707,611	-461,660,557	-230,085,295
이익잉여금	12,421,797,724	-1,972,159,831	1,854,403,884
자본총계	31,501,356,444	20,955,401,519	28,273,730,500

통합 손익계산서			
항목	제 22 기	제 21 기	제 20 기
	(2024.12.31-2025.12.30)	(2023.12.31-2024.12.30)	(2022.12.31-2023.12.30)
운용수익	14,945,846,082	-3,433,155,248	5,307,418,050
이자수익	4,811,910	9,345,024	8,346,964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14,941,034,172	-3,442,500,272	5,299,071,086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406,654,654	403,360,690	431,209,135
관련회사 보수	406,654,654	403,360,690	431,209,135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043,670	607,510	687,250
당기순이익	14,538,147,758	-3,837,123,448	4,875,521,665

매매회전율	0	0	0
-------	---	---	---

-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이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이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 (연기준)로 합니다.
- (주2) 위 재무제표는 운용 펀드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재무상태표의 부채 및 자본항목과 손익계산서의 비용 항목은 각 개별 종류 수익증권의 해당 항목 값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주3) "통합재무정보상의 재무상태표"와 "통합감사(BSPL)상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 (주4) "통합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통합감사(BSPL)상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 (주5) 회계감사인인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6) 기타수익에 포함되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22기 0백만원, 21기 0백만원, 20기 0백만원 발생)
- (주7) 기타비용에 포함되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22기 0백만원, 21기 0백만원, 20기 0백만원 발생)
- (주8) 매매회전율 산출 관련 주식 매수·매도 금액, 보유주식의 평균가액,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등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식매수		주식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 (A/B)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191	8 백만원	295	14 백만원	12 백만원	119.45	32.00

- (주9)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산별(주식·주식이외의 증권·부동산·장내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 등) 거래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증은아침의망자1호[주식](종)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2024.12.31 - 2025.12.30)			전기(2023.12.31 - 2024.12.30)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166,870	151.9759	0.0911	96,544	96	0.0993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부동산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기타(REPO,대차,콜 등)	478	0	0.0406	4,291	0	0.0014
합계	167,348	152	0.0909	100,835	96	0.0952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억좌, 억원]

종류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22.12.31 - 2023.12.30	110	97	3	3	10	10	103	109
	2023.12.31 - 2024.12.30	103	109	3	3	15	16	90	82
	2024.12.31 - 2025.12.30	90	82	5	6	21	26	74	117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22.12.31 - 2023.12.30	0	0	1	2	0	1	1	2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23.12.31 - 2024.12.30	1	2	4	5	5	7	0	1
	2024.12.31 - 2025.12.30	0	1	1	1	1	1	0	1
수수료선취-오프라인-전환 가능1(A-u)	2022.12.31 - 2023.12.30	3	3	1	1	2	2	2	2
	2023.12.31 - 2024.12.30	2	2	1	1	1	1	2	2
	2024.12.31 - 2025.12.30	2	2	1	2	2	2	2	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 수채감(C5)	2022.12.31 - 2023.12.30	164	143	3	3	15	14	152	160
	2023.12.31 - 2024.12.30	152	160	2	3	19	19	135	120
	2024.12.31 - 2025.12.30	135	120	6	8	19	24	123	19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22.12.31 - 2023.12.30	8	7	1	1	1	1	7	8
	2023.12.31 - 2024.12.30	7	8	0	0	3	4	5	5
	2024.12.31 - 2025.12.30	5	5	1	1	3	4	3	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 연금(C-re)	2022.12.31 - 2023.12.30	0	0	0	0	0	0	0	0
	2023.12.31 - 2024.12.30	0	0	0	0	0	0	0	0
	2024.12.31 - 2025.12.30	0	0	0	0	0	0	0	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2022.12.31 - 2023.12.30	0	0	0	0	0	0	0	0
	2023.12.31 - 2024.12.30	0	0	0	0	0	0	0	0
	2024.12.31 - 2025.12.30	0	0	0	0	0	0	0	0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2026.08.31 현재/단위:%]

구분	최근 1년 2025.09.01 ~ 2026.08.31	최근 2년 2024.09.01 ~ 2026.08.31	최근 3년 2023.09.01 ~ 2026.08.31	최근 5년 2021.09.01 ~ 2026.08.31	설정일 이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126.60	59.27	38.22	16.21	6.74
수수료선취-온라인(A-e)	127.45	59.89	38.75	16.67	15.83
수수료선취-오프라인-전환가능1(A-u)	126.38	59.12	38.08	16.09	7.7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126.18	58.96	37.95	15.98	8.23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127.23	59.73	38.62	16.55	12.7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e)	127.75	60.12	38.96	16.86	11.15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127.55	59.96	38.82	16.75	9.38
비교지수(%)	107.73	56.81	37.00	15.84	9.14
수익률 변동성(%)	41.72	32.60	28.04	23.82	20.92

(주1) 비교지수 :

설정일 이후 - 2004.04.11 : 비교지수 없음

2004.04.12 이후 : KOSPI종합지수*95% + 콜금리*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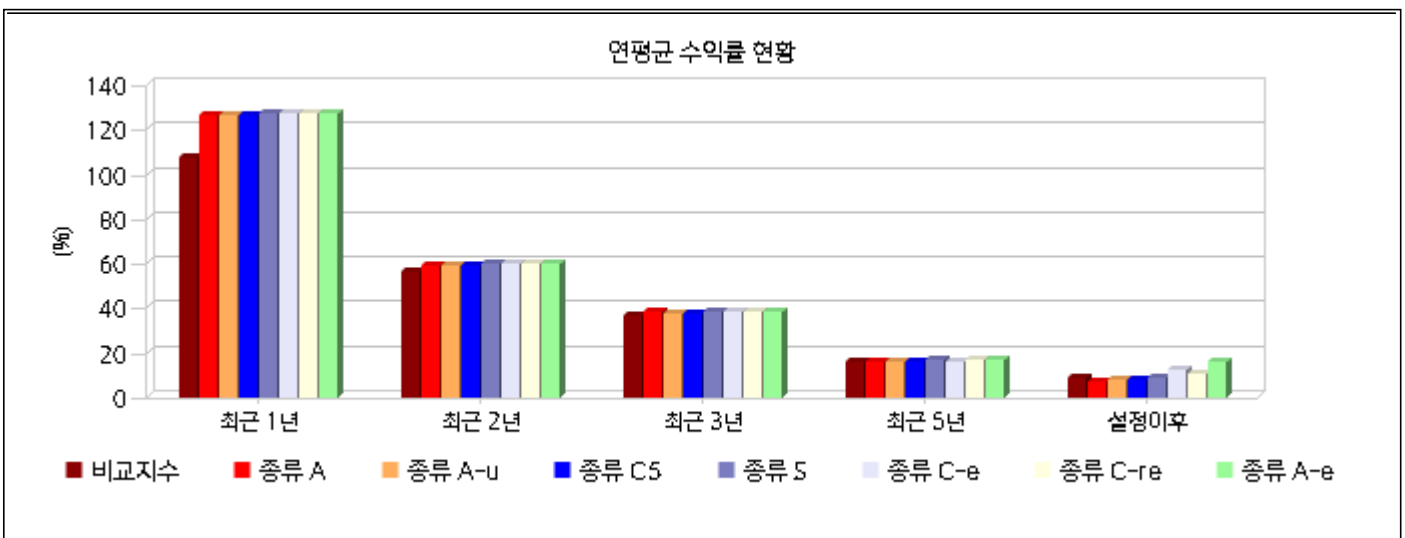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다만, 설정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 수익률에 대해 연환산하게 되므로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주4)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주5)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주6) 상기 수익률 정보는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에 대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에 대한 수익률 정보는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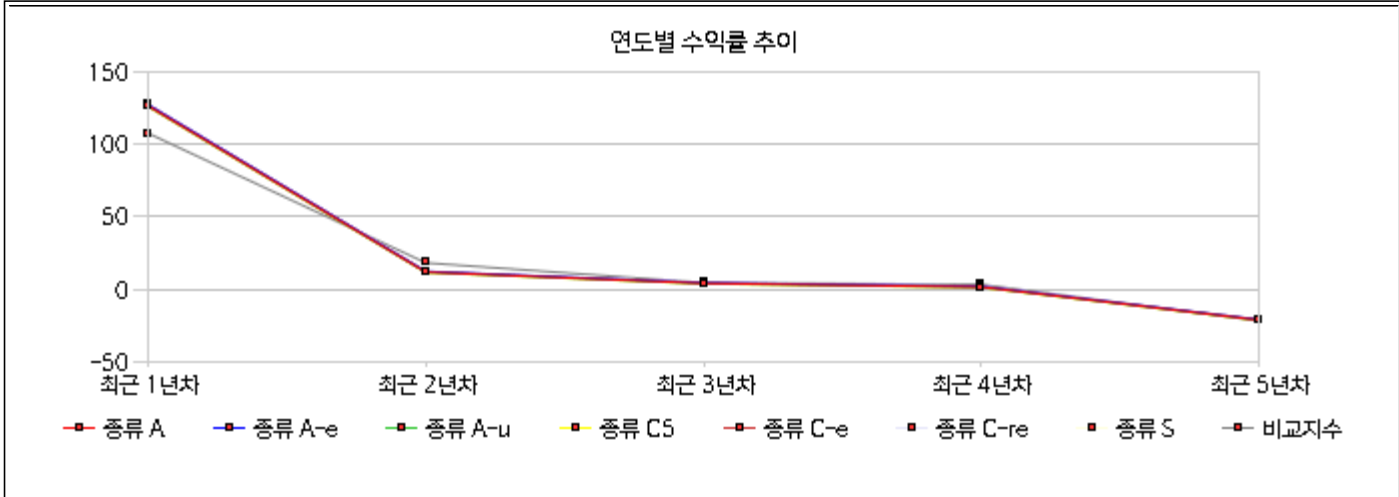
[2026.08.31 현재/단위:%]

구분	최근 1년차 2025.09.01 ~ 2026.08.31	최근 2년차 2024.09.01 ~ 2025.08.31	최근 3년차 2023.09.01 ~ 2024.08.31	최근 4년차 2022.09.01 ~ 2023.08.31	최근 5년차 2021.09.01 ~ 2022.08.31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126.60	11.94	4.19	1.69	-21.12
수수료선취-온라인(A-e)	127.45	12.39	4.58	2.12	-20.78
수수료선취-오프라인-전환가능1(A-u)	126.38	11.84	4.08	1.59	-21.1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126.18	11.72	3.98	1.48	-21.28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127.23	12.28	4.49	2.00	-20.8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e)	127.75	12.58	4.76	2.29	-20.64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127.55	12.45	4.65	2.18	-20.68
비교지수(%)	107.73	18.37	4.66	3.47	-2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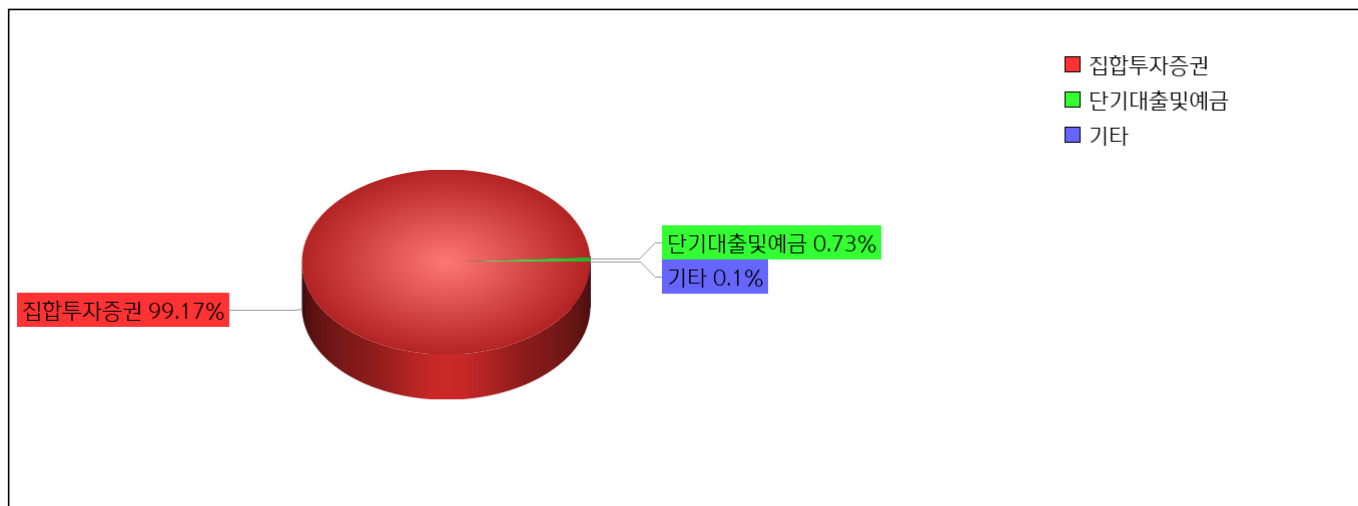
주1) 비교지수 :
 설정일 이후 - 2004.04.11 : 비교지수 없음
 2004.04.12 이후 : KOSPI종합지수*95% + 콜금리*5%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단순 누적 수익률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세전 수익률의 변동추이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설정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의 방식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5)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주6) 상기 수익률 정보는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을 대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에 대한 수익률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간	수익률 기재 방식
6개월 미만	기재하지 않습니다.
6개월 초과 1년 미만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기간 수익률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 : 연환산수익률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1)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자투자신탁)



[2026.08.31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0 (0.00)	0 (0.00)	0 (0.00)	472 (99.17)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3 (0.73)	0 (0.10)	476 (100.00)
합계	0 (0.00)	0 (0.00)	0 (0.00)	472 (99.17)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3 (0.73)	0 (0.10)	476 (100.00)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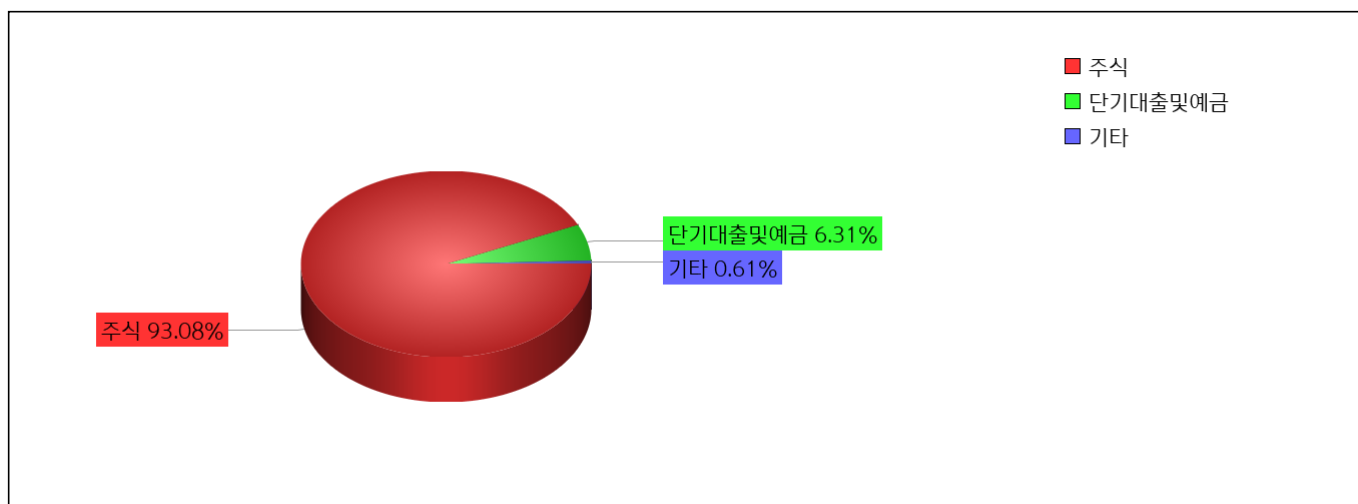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산구성현황

[신한프레스티지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6.08.31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589 (93.08)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40 (6.31)	4 (0.61)	633 (100.00)
합계	589 (93.08)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40 (6.31)	4 (0.61)	633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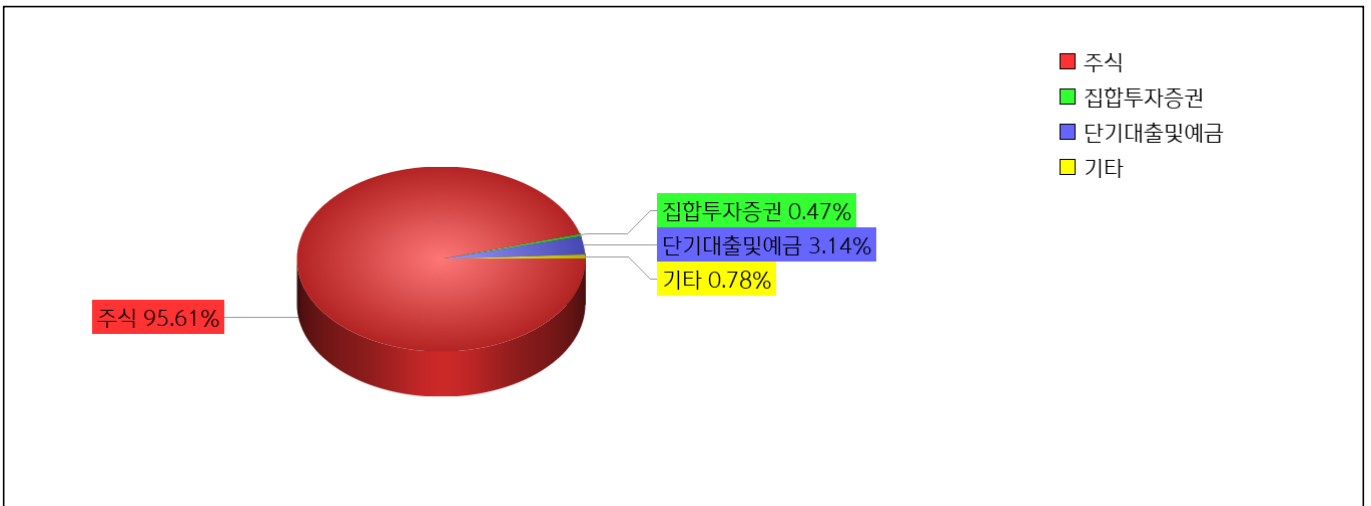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산구성현황 [신한패러다임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6.08.31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2,568 (95.61)	0 (0.00)	0 (0.00)	13 (0.47)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84 (3.14)	21 (0.78)	2,686 (100.00)
합계	2,568 (95.61)	0 (0.00)	0 (0.00)	13 (0.47)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84 (3.14)	21 (0.78)	2,686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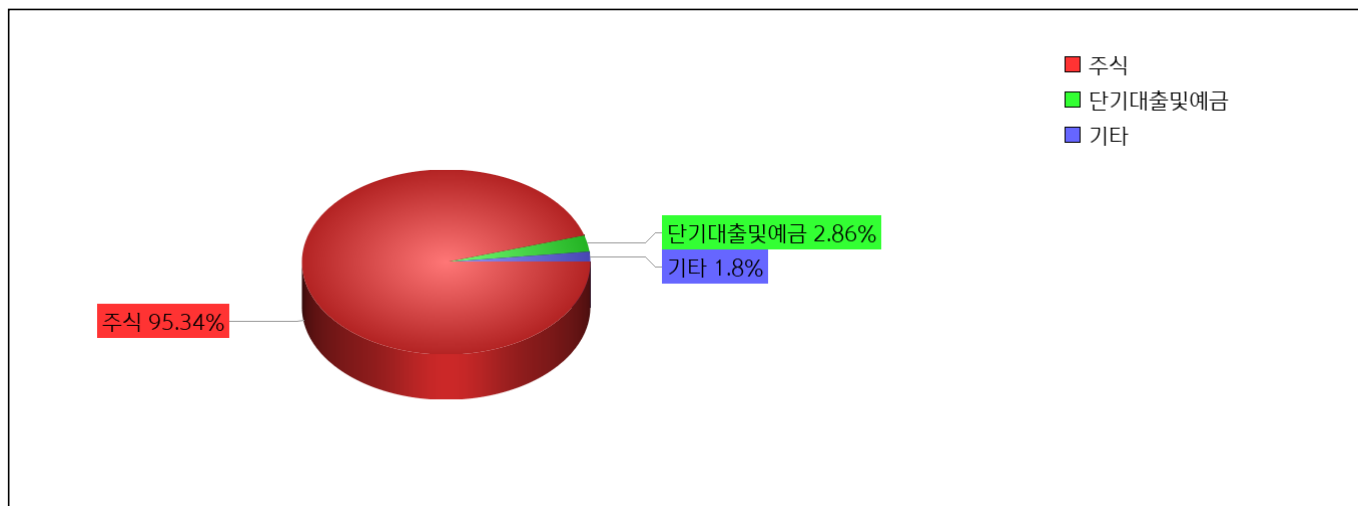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산구성현황 [신한좋은아침희망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6.08.31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507	0	0	0	0	0	0	0	0	15	10	532
	(95.3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86)	(1.80)	(100.00)
합계	507	0	0	0	0	0	0	0	0	15	10	532
	(95.3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86)	(1.80)	(100.00)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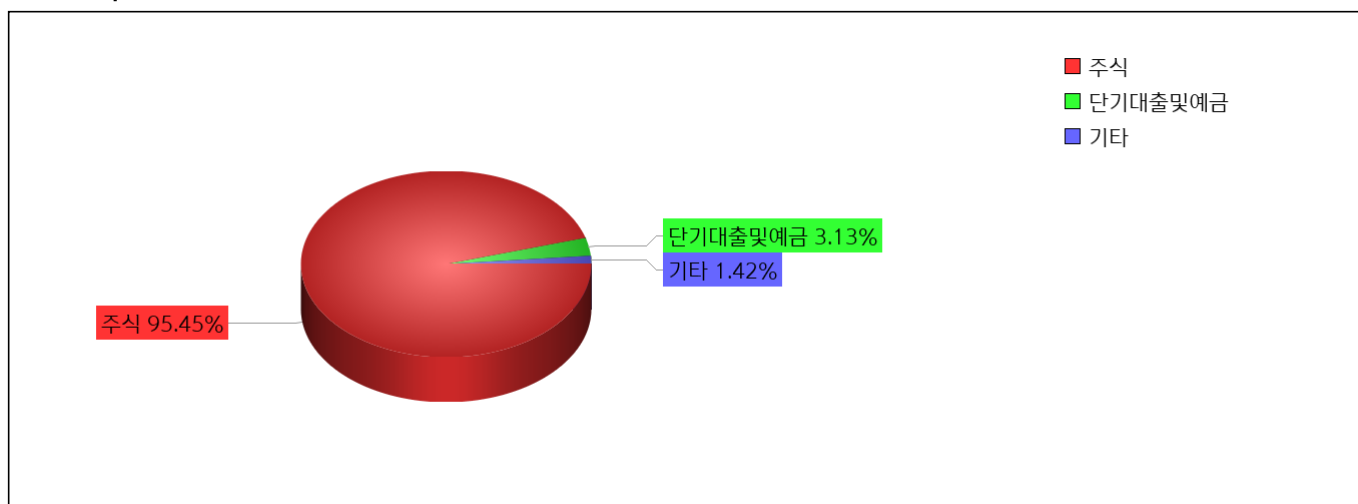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산구성현황

[신한Tops아름다운SRI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6.08.31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447	0	0	0	0	0	0	0	0	15	7	468
	(95.4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13)	(1.42)	(100.00)
합계	447	0	0	0	0	0	0	0	0	15	7	468
	(95.4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13)	(1.42)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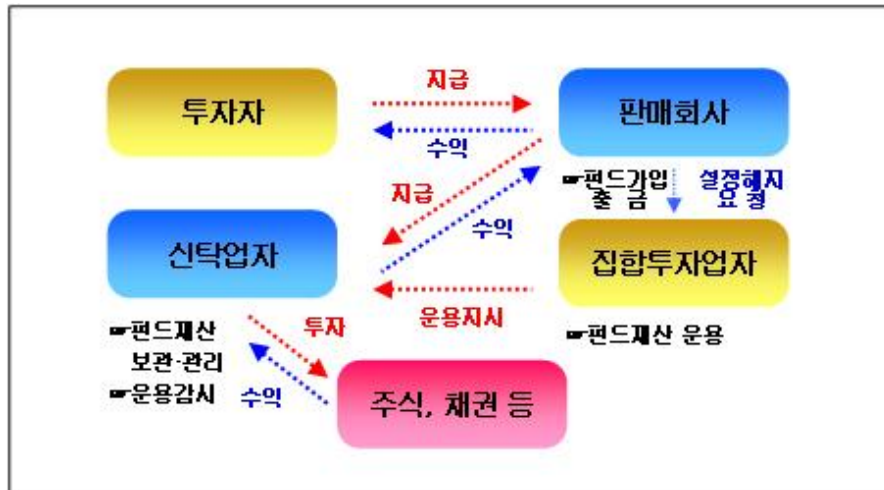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 사 명	신한자산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TP타워 23~26층 (대표전화 : 02-767-5777, 홈페이지 : www.shinhanfund.com)
회 사 연 혁	2022.01 신한자산운용(주)이 신한대체투자운용(주) 흡수합병 2021.01 사명변경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주)→신한자산운용(주)) 2009.01 신한 비엔피 파리바 자산운용(주) 출범 (신한 비엔피 파리바 투자신탁운용(주)과 SH자산운용(주)의 합병) 2008.09 신한금융지주그룹, 비엔피 파리바 금융그룹 합작운용사 출범을 위한 MOU체결
자 본 금	887억원
주 요 주 주 현 황	신한금융지주(100%)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요약재무상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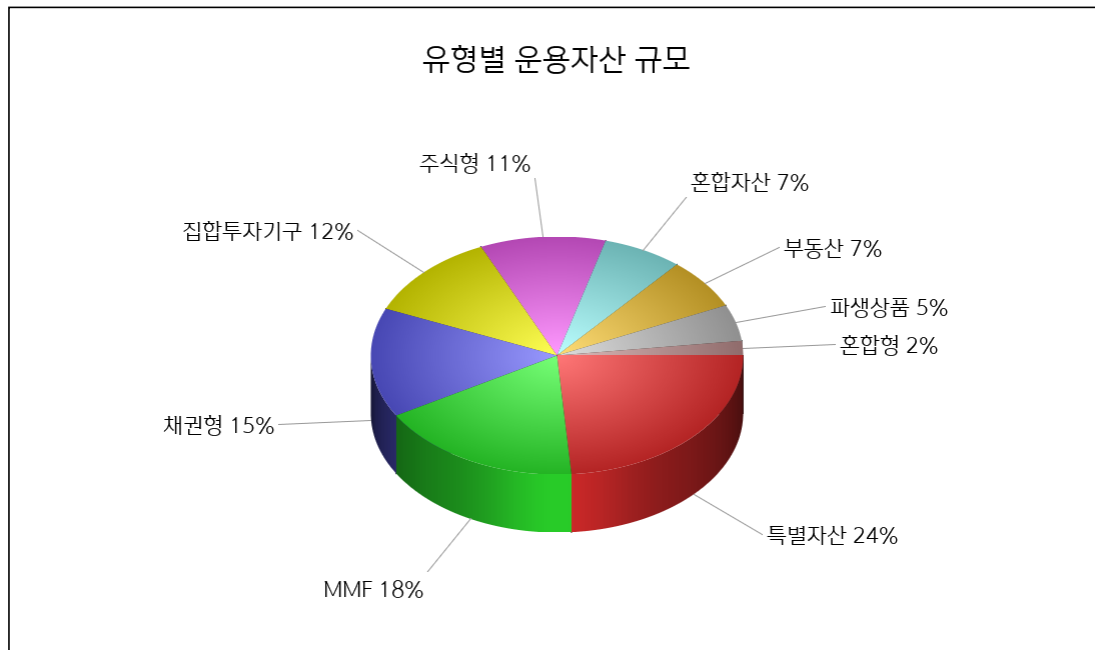
구분	제30기 2025년12월말	제29기 2024년12월말
현금및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50,922	45,403
유가증권	236,187	363,342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5,625	5,546
파생상품자산	207	41
기타자산	55,279	46,837
유형자산	33,091	42,150
자산총계	381,311	503,319
예수부채		200
차입부채	15	528
기타부채	87,959	186,263
부채총계	87,974	186,991
자본금	88,667	88,667
자본잉여금	59,980	59,980
자본조정	304	30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375
이익잉여금(결손금)	144,386	168,752
자본총계	293,337	316,328
부채와자본총계	381,311	503,319

[요약손익계산서]

구분	제30기 (25.01.01- 25.12.31)	제29기 (24.01.01- 24.12.31)
영업수익	197,447	241,409
영업비용	129,826	156,569
영업이익(손실)	67,621	84,840
영업외수익	6,371	572
영업외비용	1,458	1,793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 사업이익	72,534	83,618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 용	16,523	17,615
계속사업이익(손실)	56,010	66,003
중단사업이익(손실)		
당기순이익(손실)	56,010	66,003

라. 운용자산 규모 (2026.08.31 현재 / 단위 : 억원)(일임자산제외)

구분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집합투자 기구	파생상품					
수탁고	94,613	20,341	123,314	99,071	41,539	62,506	199,753	56,533	148,821	846,851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투자자문 회사로부터의 투자자문]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투자자문회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투자자문회사를 선정할 시 그 보수는 집합투자업자의 보수로부터 지급합니다(모투자신탁의 경우 관련 자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의 보수).

②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의 투자자문회사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습니다.

*투자자문회사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투자자문회사의 업무 내용은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해당 펀드	신한Tops아름다운SRI증권모투자신탁[주식]
회사명	지속가능 금융센터 주식회사
회사의 개요	2002.00.00 "이에프 컨설팅" 설립 2015.01.22 "지속가능금융센터" 법인 신설 2016.12.15 (주)서스틴베스트 자회사 편입
투자자문회사의 업무범위	상장기업의 ESG(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기업지배구조)) 평가 및 분석 업무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대표전화 : 02-2073-7114)
인터넷 홈페이지	www.kbstar.com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 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수익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18,19,20층 (대표전화 : 2180-0400)
인터넷 홈페이지	www.shinhanfundpartners.com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 소	연락처	인터넷 홈페이지
한국자산평가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02-2251-1300	www.koreaap.com
나이스피앤아이(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02-398-3900	www.nicepni.co.kr
KIS자산평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02-3215-1400	www.bond.co.kr
에프앤자산평가(주)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9	02-721-5300	www.fnpricing.com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에프앤자산평가(주)의 경우 국내채권(CD, CP)만 평가 및 제공함)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 투자신탁 수익자총회가 개최되어 그 수익자 총회의 목적이 자 투자신탁 수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 투자신탁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 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 (단,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신탁의 합병(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및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주소지 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계약 등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에 미달하는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계약 제48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환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추어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가입계좌 별로 상환대금을 지급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4)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부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로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대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등.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동 시행령 제3항 제2호 및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부됩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4)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5) 법 시행령 제270조 제2항 각호의 사항 등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계약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법시행령 제217조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기 2호 및 6호에 해당되는 경우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해진대로 다음과 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① 다음 각 호외의 사유로 집합투자계약 제42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계약 제37조와는 별도로 다음의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 또는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서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중대한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3.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수익자총회 결의의 경우 집합투자업자 변경 수익자총회 결의일 익영업일의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80일 분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산으로 지급한 비용(자문료, 시스템개발비 등)을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 총회 결의일로부터 제5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한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수익자총회 결의의 경우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신탁업자의 계산으로 지급한 비용(자문료, 시스템개발비 등)을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 총회 결의일로부터 제5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제2항 내지 제3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집합투자계약 제35조 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www.shinhanfund.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 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 구조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및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 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1)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2)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4)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 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하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다음 내용을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기록 유

지해야 합니다.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2025.09.01 - 2026.08.31)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2025.09.01 - 2026.08.31)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집합투자업자인 신한자산운용(주)의 중개회사 선정기준입니다. 분기(필요시 변경가능)별로 내부 중개기관위원회(Broker Committee)에서 아래의 선정기준에 따라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 리서치의 양과 질 - 새로운 섹터 아이디어 또는 새로운 업무범위 - 거래 실행력 - 투자자의 최우선 가치 - 비용/수수료 구조 - 거래체결의 질과 완벽함 - 신용과 평판의 질 - 중개기관과 집합투자업자의 IT/통신 연결 - 중개기관의 내부 준법감시 절차 선택된 중개회사들의 거래량 분배는 내부 기준을 바탕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배분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 준 대가로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투자자가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간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신탁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을 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 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은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며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환매조건부 매수/매도	환매조건부 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